



의안번호	제44호
회의 연월일	2025. 4. 21. (제562회 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(대통령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5. 4. 21.

교통기획과장, 교통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(법률 제20647호, 2025. 1. 7. 공포, 2025. 7. 8. 시행)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·회신 방법,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)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·

도경찰청장이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(「도로법」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재량 측정자료 등 계측자료
2. 위반 일시·장소, 차량번호 등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
3. 운전자 인적사항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시·도경찰청장이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에 요청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회신받을 수 있다.

제84조의3(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)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사고 발생 현황
2. 교통안전 정책 관련 자료

3. 교통안전 관련 예산

4. 그 밖에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② 교통안전지표는 시·도경찰청별로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.

③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)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(「도로법」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적재량 측정자료 등 계측자료</u> <u>2. 위반 일시·장소, 차량번호 등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</u> <u>3. 운전자 인적사항</u> <u>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시·도경찰청장이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에 요청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회신받을 수 있</u>

<신 설>
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 ~ ⑤
(생략)

<신 설>

다.

제84조의3(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)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사고 발생 현황
2. 교통안전 정책 관련 자료
3. 교통안전 관련 예산
4. 그 밖에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② 교통안전지표는 시·도경찰청별로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.

③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
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에 관한 업

	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 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